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2.12.30)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7. 당첨자발표 및 계약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명곡 A-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12.31~2003.12.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12.30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현황 게시)** 접수기간동안 당일 17:00까지의 신청현황을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18:00 게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01.16(월)~20(금)	'23.01.31(화)	'23.02.06(월) ~ 02.10 (금)	소명대상 개별통보	'23.04.07(금)	'23.04.18(화) ~ 04.21(금)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행복주택 308세대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양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계	계약금 (5%)	잔금 (95%)							
21B	대학생	8	1	2	21.98	11.6061	3.6817	8.4676	45.7354	**20,400**	1,020	19,380	**85,000**	(+) 1,000	21,400	80,000	6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25.02**
														(-) 17,000	3,400	120,410			
	청년		1							**21,600**	1,080	20,520	**90,000**	(+) 2,000	23,600	80,000	6		
														(-) 18,000	3,600	127,500			
	주거급여 수급자		2	2						**18,000**	900	17,100	**75,000**	(+) -	-	-	20		
														(-) 15,000	3,000	106,250			
21A	대학생	88	20	40	21.98	11.5061	3.6817	8.4676	45.6354	**20,400**	1,020	19,380	**85,000**	(+) 1,000	21,400	80,000	6		
														(-) 17,000	3,400	120,410			
	청년		20							**21,600**	1,080	20,520	**90,000**	(+) 2,000	23,600	80,000	6		
														(-) 18,000	3,600	127,500			
	주거급여 수급자		4	4						**18,000**	900	17,100	**75,000**	(+) -	-	-	20		
														(-) 15,000	3,000	106,250			
26A	대학생	60	14	26	26.52	13.6072	4.4423	10.2166	54.7861	**24,480**	1,224	23,256	**102,000**	(+) 4,000	28,480	82,000	6		
														(-) 20,000	4,480	143,660			
	청년		14							**25,920**	1,296	24,624	**108,000**	(+) 6,000	31,920	78,000	6		
														(-) 22,000	3,920	153,830			
	주거급여 수급자		3	3						**21,600**	1,080	20,520	**90,000**	(+) 2,000	23,600	80,000	20		
														(-) 18,000	3,600	127,500			
26B (주거약자)	고령자	20	10	10						**27,360**	1,368	25,992	**114,000**	(+) 7,000	34,360	79,000	20		
														(-) 23,000	4,360	161,910			
38A	신혼부부	22	11	11	38.39	18.9716	6.4306	14.7895	78.5817	**42,000**	2,100	39,900	**175,000**	(+) 19,000	61,000	80,000	6~10		
														(-) 35,000	7,000	247,910			
38B (주거약자)	고령자	22	11	11						**39,900**	1,995	37,905	**166,250**	(+) 17,000	56,900	81,250	20		
														(-) 34,000	5,900	237,080			
44	신혼부부	88	44	44	44.94	21.8424	7.5278	17.3129	91.6231	**48,800**	2,440	46,360	**203,330**	(+) 24,000	72,800	83,330	6~10		
														(-) 41,000	7,800	288,740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철거민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21B/A형·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B/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B/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26B, 38B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B/A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붙박이장,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2.12.30)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02)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합니다.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순위**

1순위	창원시 또는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대학생)	창원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창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창원시 및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창원시 외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단, 부모 모두 창원시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창원시에 3년 이상 거주	창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21B/A형, 2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12.31~2003.12.30)**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854,53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순위**

1순위	창원시 또는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창원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창원시**에 3년 이상 거주	**창원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상단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2000940**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경쟁 시 추첨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21B/A형, 26A형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인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인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로 신청할 경우 소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창원시 또는 연접지역(김해시, 밀양시.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창녕군,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창원시가 거주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우선공급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창원시**에 3년 이상 거주	**창원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접 발급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상단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클릭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2000940**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창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창원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창원시가 거주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창원시**에 5년 이상 거주	-	**창원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창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창원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공고일(2022.12.30)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창원시가 거주지인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창원시**에 5년 이상 거주	**창원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창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의 경우 동일 배점 및 창원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접수	온라인 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온라인 접수] **'23.01.16(월) 10:00 ~ 01.20(금) 17: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접수]** **'23.01.18(수)** 10:00 ~ 16:00 LH경남지역본부 홍보관	**'23.01.31(화)** 17:00 이후 **(확인방법)** 온라인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개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23.02.06(월) ~ 02.10(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 일반우편, 현장제출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명곡 담당자 앞	**'23.04.07(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전자 계약]** **'23.04.18(화) 10:00 ~ 04.21(금) 17:00** ※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계약]** **'23.04.21(금)** 13:00 ~ 16:00 LH경남지역본부 홍보관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철거민 또한 신청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현장접수 미신청시 청약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3.01.31(화) 17:00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접수가 유효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6.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23.02.10(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현장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일시 : '23.01.18(수) ~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하며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장접수·계약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 모바일)청약 방법

o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o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o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구 선택	주택형 선택	신청유형 선택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 공급선택	서약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내역확인)

o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o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23.01.16(월) 10:00부터 '23.01.20(금) 17:00까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3.01.16(월) 10:00부터 '23.01.20(금) 17:00까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접수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6. 신청서류] 확인 후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구비하여 지정된 날짜에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현장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 현장신청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일 시	**'23.01.18(수) 10:00 ~ 16: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장 소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약 도	
구 비 서 류	□ **아래 서류와 [6.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LH양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LH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착용(미착용 시 입장불가) 및 손소독제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 [6. 신청서류] 참고)**

5.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청약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01.31(화)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상단『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등기우편 외 방법(예. 일반우편, 택배 등)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02.06(월) ~ 02.10(금)** **('23.02.1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6. 신청서류]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명곡 A-2BL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51430,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30021/21A))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2.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서식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1통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1-1 LH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외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별지 1-2,1-4 LH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별지1-3 LH양식))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별지3)**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LH양식)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계층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학교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별지2-1)**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별지2-2)** •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도 발급가능) ※ 입주 시점에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입주 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LH양식) (LH양식)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신청자 본인**의 아래서류 제출 • '배우자의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배우자**의 아래서류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고령자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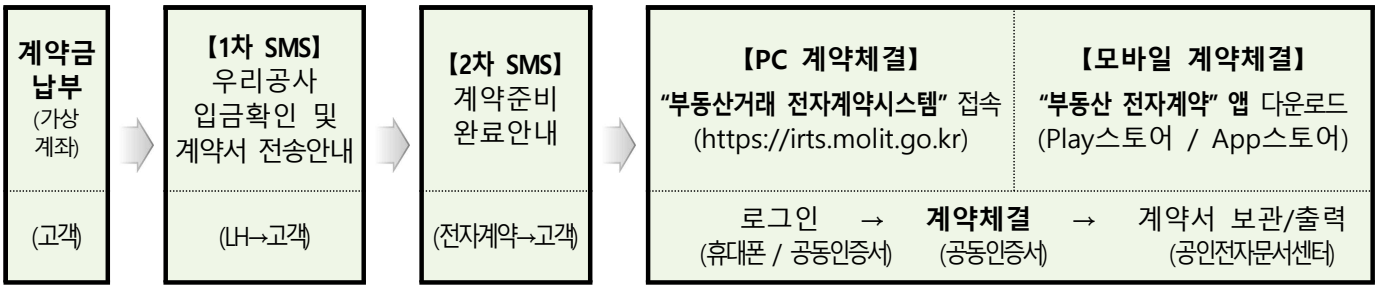
■ 당첨자 발표 : '23.04.07(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 약 : '23.04.18(화) 10:00 ~ 04.21(금) 17:00,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일시 : '23.04.21(금) 13:00 ~ 16:00 / 장소 : LH경남지역본부 1층 홍보관]**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LH양식-현장비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LH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9.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대학생, 청년 계층</td><td>6년</td></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able>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d></tr>
</table>

	<table><tr><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d><td colspan="2">할증비율</td></tr><tr><td>최초 갱신계약 시</td><td>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d></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 **<u>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u>**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2년의 경우 3,55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단지여건]**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등의 수정, 성능 개선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의 적용 여부는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승인도면, 실시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현황, 녹지의 조성상태(법면, 식재), 출입구 등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관련 인·허가 내용(계획)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세히 검토 확인하여 신청(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는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인근의 특정세대의 경우 통행 차량 소음과 야간 전조등 불빛에 의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휀룸 등이 인접한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또는 주기적 가동 및 휀(fan)의

	가동으로 인해 지상돌출물(D/A)을 통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인접한 경우 소음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단지배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 재활용보관소 및 지하주차장과 경비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지붕 옥탑층과 외벽에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시기와 위치, 전파수신 측정 등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여건에 의합니다. • 아파트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공간은 관련법령에 의해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는 동별 구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연댐퍼가 동별로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1대당 사용하는 세대 수는 동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내부시설(가구 및 비품류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단지이며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지하주차장, 놀이터, 주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201동 옥탑 지붕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차량 주출입구에는 차량출입차단기가 설치되므로 특정세대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야간 차량 조명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1동 및 202동 지붕층에는 태양광시설이 설치됩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공용전기요금이 절감되거나, 절감금액 범위 내 에서 일부가 유지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201동, 202동)에는 택배보관소가 설치되며, 무인택배보관함으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및 옥외조명 등의 설치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층세대 전면의 경우에는 빛의 산란에 의한 조망권 및 빛공해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출입구 주변, 경로당 실내벽부, 놀이터 주변에는 미세먼지표시기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트레이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와 이동형충전기용 콘센트 6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아파트 내 비상발전기를 활용(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있을 경우)하여 피크전력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전력수요관리 정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전지시가 있을 경우 단지 내 비상발전기 의무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개폐기(PAD S/W) 및 변압기(T/R)가 단지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제치수를 측정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 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38TYPE 제외)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비상탈출구 경량벽체에는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엄금함)
- 38TYPE 세대의 비상탈출구는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으며, 덮개 개폐시 해당 세대 및 해당 세대의 아래세대, 관리소에 경보가 발생되니, 비상시를 제외한 임의 개폐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비상탈출구는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엄금함)
-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평형이라도 위치가 상이합니다.
- 주거약자용 세대에는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됩니다. (26㎡형 : 욕실, 38㎡형 : 욕실,침실1,침실2)
- 세대 거설벽부면에는 세대단말기(7인치LCD칼라,터치스크린)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발코니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욕실은 시스템 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신청(계약) 전 아파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상세히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의 개설 계획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 유무,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과 주변 개발에 따른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또는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안내드리는 지정일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등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신청(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 방안은 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과 본인증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계약자가 주거약자이거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높이 – 바닥에서 1.2M 이내 설치	
욕실	좌변기 옆에 75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1개)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부엌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 높이 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 (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거주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경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신청서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23.04.18(화)~21(금)) 현장계약 체결 또는 증빙서류·신청서 등기우편 송부
 (※ 우체국 소인이 '23.04.21(금) 이내여야 함)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창원명곡 A-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공구	시공업체	연대보증업체	감리업체
창원명곡 A-2BL	2 (건기토)	덕진토건 주식회사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승원종합건설(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랍건축
				㈜지화기술단
				㈜대경이앤씨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문의처	전 화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신청접수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